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11. 27.(수) 16:00 배포 2024. 11. 27.(수) 15:00

암호화자산 보고체계(CARF) 다자간 정보교환협정(MCAA) 서명

- 암호화자산 관련 글로벌 조세투명성 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에 기여

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는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제포럼[1](´24년, 회원국 171개국) 총회(11월26일~11월28일)에서 독일·일본·프랑스 등을 포함한 48개 국가의 대표단은 「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(CARF MCAA)」[2]에 공식 서명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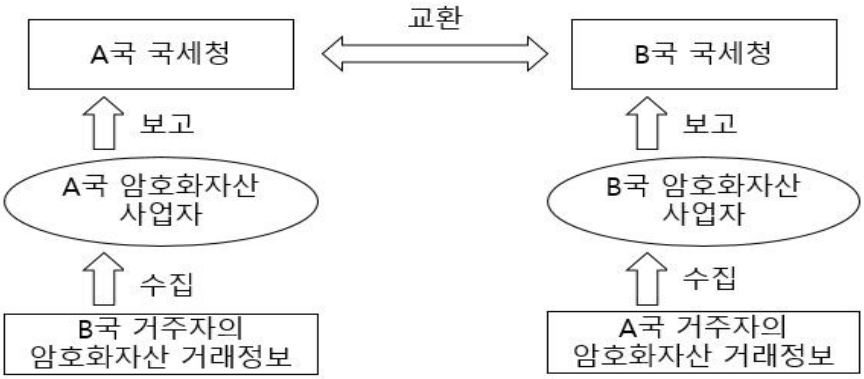
1) 국제 조세투명성과 조세 정보교환의 표준 이행을 위해 '09.9월 설립된 경제협력개빌기구 산하기구

2) MCAA CARF :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pursuant to the Crypto-Asset Reporting Framework

기획재정부 대표단(수석대표: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)도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(CARF MCAA) 서명식에 참석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(CARF MCAA)은 우리나라가 지난 ´10년 서명(´12년 발효)한 「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」을 기반으로,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.

협정 서명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가 주요20개국(G20)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(CARF: Crypto-Asset Reporting Framework)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.



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실제 국가간 정보교환은 협정문 서명국들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될 예정이며, 기획재정부는 ´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령을 제·개정하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세제실 국제조세협력팀	책임자	팀 장	김성수 (044-215-46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상현 (qwer0318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개요 및 CARF 주요내용

□ (개요) **암호화자산사업자**가 **암호화자산이용자**(비거주자 등)의 **거래정보를** 수집하여 **과세관청에 보고** → 과세관청은 이를 **가입국 간 매년 상호교환**(자동정보교환)

□ CARF 주요내용

암호화자산 (Crypto Asset) 정의	거래의 검증·보호를 위한 분산원장기술(또는 유사 기술)에 기반하여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 * 가상화폐(비트코인 등) 외에 스테이블코인, 암호화자산 형태의 파생상품, 대체불가토큰(NFT), 토큰증권 등 포함
보고대상 암호화자산	조세회피 위험이 낮은 **다음 3가지 경우*를 제외**한 모든 암호화자산 * 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(CRS 적용대상에 포함) ② 특정 전자화폐 상품(CRS 적용대상에 포함) ③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절하게 판단한 암호화자산
보고의무자	**암호화자산사업자**: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교환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혹은 단체*(해당 교환거래 상대방 혹은 중개인 역할을 하거나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) * 암호화자산 거래소, 암호화자산 브로커, ATM 운영자 등
보고대상 사용자	**보고대상 거래***를 한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인 고객 *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의 ①**교환**(암호화자산-법정화폐 간, 암호화자산 간 교환) 및 ②**이전**(한 사용자의 암호화자산 주소·계좌에서 또는 계좌로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을 이동) ※ **소매결제**(재화·서비스 대가로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이전)의 경우 5만불 초과 시로 한정
보고제외자	증권시장 상장단체(+그 관련 단체), 정부단체, 국제기구, 중앙은행
보고 정보	(개인 사용자) 이름, 주소, 거주관할권, 납세자번호, 출생일 등 (단체 사용자*) 이름, 주소, 거주관할권, 납세자번호 * 실질적 지배자 존재시, 그 역할, 이름, 주소, 거주관할권, 납세자번호, 출생일 등 (사업자)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이름·주소·식별번호 (**거래 정보**) 해당 연도 각 보고대상 사용자의 암호화자산 별 **거래내역** - 암호화자산 **이름**, 거래 **유형**, 거래의 총 **지급·수취 금액,** 암호화자산의 **총거래량, 거래 횟수** 등
실사 절차	AML(자금세탁방지)·KYC(고객확인제도)를 통해 문서 수집, 유효한 본인확인서* 취득 및 검토 등을 통해 **보고대상 사용자인지 여부 판단**, (단체의 경우 실질적 지배자가 있는지, 보고대상자인지 판단) * 이름, 거주지 주소, 세법상 거주 관할권, 납세자번호 등 (+개인의 경우 생년월일) - (기존 사용자) 규정 발효일 이후 12개월까지 본인확인을 받아야 함 - (신규 사용자) 사용자와 관계를 맺는 즉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함
교환 시기	해당 정보와 관련된 **1역년**(1.1.~12.31)**의 정보를 역년 말 이후 9개월 이내에** 국가 간 교환 ※ '26년 귀속 정보를 **'27년부터 교환** 예정

참고 2 서명식에 참석한 48개 국가 · 지역

오 스 트 리 아
바 베 이 도 스
벨 기 에
브 라 질
불 가 리 아
캐 나 다
케 이 맨 제 도
콜 롬 비 아
코 스 타 리 카
체 코
덴 마 크
에 스 토 니 아
페 로 제 도
핀 란 드
프 랑 스
독 일
지 브 롤 터
그 리 스
건 지
헝 가 리
아 일 랜 드
맨 섬
이 탈 리 아
일 본

저 지
한 국
리 히 텐 슈 타 인
리 투 아 니 아
룩 셈 부 르 크
네 덜 란 드
뉴 질 랜 드
노 르 웨 이
폴 란 드
포 르 투 갈
산 마 리 노
싱 가 포 르
슬 로 바 키 아
슬 로 베 니 아
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
스 페 인
스 웨 덴
스 위 스
영 국
바 하 마
사 이 프 러 스
이 스 라 엘
라 트 비 아
몰 타